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0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안 제54조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1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안 제54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휴게) ① (생략) <u><신설></u>	제54조(휴게)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¹⁾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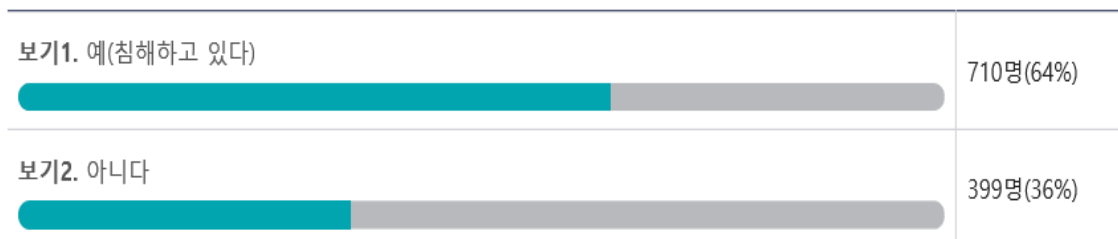
이는 연속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단축근무, 반차 등을 사용하거나 4시간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휴게시간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이 휴게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64%)를 차지하였고, 4시간 근무를 할 때 휴게없이 4시간 근로 후 퇴근을 원하는 비율이 85.1%에 달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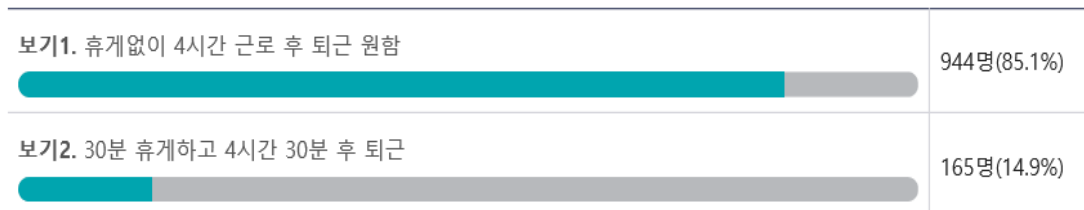
< 휴게시간 개선 관련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설문방식 1,109명 참여)

질문 1. [필수]귀하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법정되어 있는데 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휴게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질문 2. [필수]귀하는 4시간 근무할 때 4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하고 회사에 4시간 30분을 머무르는 것과 휴게시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시요? ※ 휴게는 근로 시작과 종료 사이에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2022.1.4.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일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 더 머물러야 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관련 민원, 건의 등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